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예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OEM의 경우 신청인=원청 / ODM의 경우 신청인=제조사)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OEM의 경우 수탁자=하청 / ODM의 경우 수탁자란 공란)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방식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개발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품목 해당 품목
	제품명	용도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 품목에 따르는 용도 기재 (표백제 품목의 경우 계열도 표기)
	제형	중량·용량·매수·크기 공통제형 or 품목에 따르는 제형 기재 해당 제형에 따라 기재 액체(mL) / 에어로졸(g) / 고체(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수입품일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수입품일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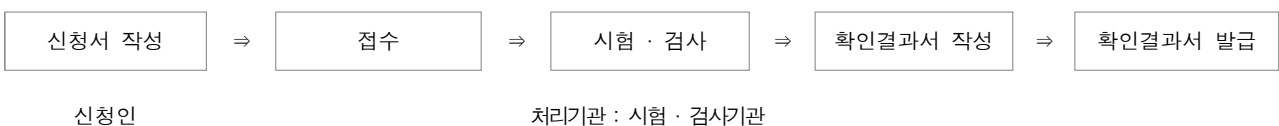
KOTITI 시험연구원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합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1.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에는 수탁자 정보를 적습니다.
2.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제품 사진	제품 설명서
<p style="text-align: center;"><앞></p> <p style="text-align: center;">제품의 사진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고, 제품의 전체 형태가 드러나야 함 (의뢰시료 완제품 컬러 사진, 표시사항 라벨링 제외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특징 2.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용자 - 사용공간 또는 대상 - 부가기능 3.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사용량(해당시 必) 4. 주의사항(일반 or 사용시) 5. 기타사항 <p>※ 제품 설명서는 품목별, 제품특징별로 상이하므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가능한 위의 항목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소비자정보 제공차원에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함</p>
<p style="text-align: center;"><뒤></p> <p style="text-align: center;">제품의 사진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고, 제품의 전체 형태가 드러나야 함 (의뢰시료 완제품 컬러 사진, 표시사항 라벨링 제외 가능)</p>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① 구 분	②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 배합비 (%)	④ 용도 (기능)	비고
주요물질 (최대함량)	ㄱ (국문작성)		범위 작성 가능	예) 세정	
주요물질 (주요기능)	ㄴ (국문작성)		범위 작성 가능	예) 방향	
보존제	ㄷ (국문작성)		범위 작성 가능	예) 보존	
함량제한물질	ㄹ (국문작성)		범위 작성 불가	예) 향균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ㅁ (국문작성)		범위 작성 불가	예) 멸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 color: red;">구분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는 경우, 비고란에 '비함유' 기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 color: red;">계면활성제의 경우 비고란에 계열 표기 必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div>					
상 호 : _____ 대 표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안전기준 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함)				

작성 방법

- ① 구분 :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 주요물질 : 제품의 상당부분(최대 함량 등)을 구성하는 물질과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물질 표기. 단, 최대함량이 물 (정제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을 추가로 표기
 - ※ 주요물질이 항성분의 혼합물질인 경우(예, 방향제 등), 성분명에 “향료” 로 기재 가능
 - 보존제 : 제품 원료 및 제품 자체를 보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 함량제한물질 : 별표2에 따른 해당 품목별 함량제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기준물질 : 별표4에 따라 제품 내 함유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는 물질
-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 표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 가능
- ③ 배합비 : 주요물질(기능발현물질)과 보존제의 경우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성분의 함량을 정량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로 작성 가능
- ④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

작성 방법

1. 함유금지물질(A)은 별표 2에 따라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명과 품목별 함유금지물질명을 기재합니다.
2. 사용물질(B)은 별표 2의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함량제한물질 중 <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을 제품의 원료, 원료의 보존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물질명을 기재합니다.
3.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C)은 별표 4의 II.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경우 그 물질명을 기재합니다.
4. 함유금지물질 또는 사용물질, 함유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란에 물질을 표시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청구·발송 정보서

접수번호	확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청구 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받을 업체 정보)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견적서 E-mail			
	계산서 E-mail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일반(10일,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생분해도-21일) <input type="checkbox"/> 급행(5일,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10일/ 수수료 2배)		
확인 결과서	수령방법 (선택)	<input type="checkbox"/> 직접수령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 (주소: _____)		
	시료반환 여부	<input type="checkbox"/> 폐기 <input type="checkbox"/> 반환 (방문 수령시에 한함) - 요청시 착불 택배 수령 가능		
기타	1. 시험 접수 익일 경과 후, 의뢰 취소 불가합니다. 2. 시험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험성적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시험성적서 발행일 전까지 입금 완료 진행) 3. 접수방법: 시료 및 시험의뢰서 동봉하여 하기 주소로 방문 또는 택배 발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KOTITI시험연구원 2층 생활화학사업팀			

1. [KOTITI시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에 동의합니다.

2. 귀 연구원에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참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형]

1. 공통기준

-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
- 제품의 제형이 비교란의 세부 제형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형 선택 가능
-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 제형 제시된 경우, 품목별 제형기준이 공통기준 보다 우선
(**물체 도색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인공 눈 스프레이← 3가지 품목은 하기 '별도 관리품목 기준' 참고)

구분	분류
분사형	분무기형(폼형 포함), 스프레이형 ⁽¹⁾ ,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²⁾ , 기타 ⁽³⁾
비분사형	액체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²⁾ , 기타 ⁽³⁾

주⁽¹⁾ 고압가스, 저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방식의 제품을 말함
 주⁽²⁾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주⁽³⁾ 세부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별도 관리 품목 기준

품목	구분	용도	제형
물체 도색제	자동차용 ⁽¹⁾	실내용, 외부용	공통 제형 기준
	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분사형(스프레이형)
	주 ⁽¹⁾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필터형
인공 눈 스프레이	-	행사용 ⁽¹⁾	분사형(스프레이형)
	주 ⁽¹⁾ 특정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참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도]

품목	구분	용도
세정제	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기타표면세정용 ⁽¹⁾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²⁾
		주 ⁽¹⁾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 하여야함 주 ⁽²⁾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제거제	일반용	얼룩제거용 ⁽¹⁾ ,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가발접착제제거용,타르·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기타제거용 ⁽²⁾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²⁾
		주 ⁽¹⁾ 섬유용 얼룩제거제는 세탁제품의 세탁세제에 적용 주 ⁽²⁾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세탁세제	-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
표백제	-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계열 과탄산나트륨계, 과불산나트륨계, 과산화수소계, 염소계, 기타 등
		표백제 용도 작성 방법: 용도(계열) →예: 섬유용(과탄산나트륨계)
섬유유연제	-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광택코팅제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특수목적 코팅제	일반용	발수용, 방수용, 오염 방지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¹⁾
		주 ⁽¹⁾ 자동차용 워셔액(발수용)은 제외
녹 방지제	-	차량용 ⁽¹⁾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주 ⁽¹⁾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윤활제	-	차량용 ⁽¹⁾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주 ⁽¹⁾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다림질보조제	-	의류용, 섬유용
접착제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석재용,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순간강력용	필름용
접합제	-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흠집충진용
방향제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탈취제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공간용, 물체용,밀폐공간용 ⁽¹⁾
		주 ⁽¹⁾ 냉장고,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물체 염색제	-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물체 도색제	자동차용 ⁽¹⁾	실내용, 외부용
	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주 ⁽¹⁾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인쇄용 잉크·토너	-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인주	-	사무용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문서수정용
미용 접착제	-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
문신용 염료	-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

[참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도]

품목	구분	용도
살균제	일반용	일반물체용 ⁽¹⁾ ,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 ⁽²⁾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 ⁽³⁾ , 칫솔·허크리너 살균용
		주 ⁽¹⁾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 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주 ⁽²⁾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주 ⁽³⁾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용 제품에만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
살조제	-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
기피제	-	쌀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 ⁽¹⁾
		주 ⁽¹⁾ 깔따구용, 하루살이용 등 특정 날벌레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목재용 보존제	-	목재용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초	-	발광용, 방향용
습기제거제	-	실내공간용 ⁽¹⁾ ,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섬유용
		주 ⁽¹⁾ 자동차용(실내용)포함
인공 눈 스프레이	-	행사용 ⁽¹⁾
		주 ⁽¹⁾ 특정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공연용 포그액	-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참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④용도(기능) 목록]

No.	④용도(기능)
1	계면활성제
2	보존제
3	발열제
4	발포제
5	산화방지제
6	산도조절제
7	착색제
8	성능보조제
9	소포제
10	연화제
11	안정제(보존제 제외)
12	용매제
13	응집제
14	점도조절제
15	접착제
16	착향제
17	형광증백제
18	흡습제
19	항균제
20	소독제
21	살균제
22	표백제
23	유해화학물질
24	중점관리물질
25	기타(직접 작성)